

# 공정거래

## 1 공약 개요

1. 기업경제 관련 법령상 특수관계인 제도 운영의 합리적 개선(정책공약집 63쪽)
2. 엄정하고 객관적인 전속고발권 행사(정책공약집 108쪽)
3.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 활성화(정책공약집 108쪽)
4. 중소기업 기술 탈취 예방 및 피해구제를 위한 공정거래시스템 구축(정책공약집 108쪽)
5. 디지털 플랫폼 경제의 불공정 행위 규제 및 소비자 권익 보호 강화(정책공약집 108쪽)
6. 납품단가 제도 개선으로 제값 받는 환경 조성(정책공약집 109쪽)

## 2 구체적 분석(또는 법률적 쟁점)

1. 기업경제 관련 법령상 특수관계인 제도의 합리적 개선
  - (AS-IS) 기업경제 관련 법령에서 시대변화에 뒤떨어지는 특수관계인 친족범위(혈족 6촌, 인척 4촌) 적용으로 전혀 인지하지 못했던 친인척 회사가 계열사로 편입되는 등 부작용을 낳고 있어 현실에 맞게 정비할 필요
  - (TO-BE) 친족 범위의 합리적 조정과 경제적 공동관계가 없음이 증명된 경우 예외 인정 등
2. 엄정하고 객관적인 전속고발권 행사
  - (AS-IS) 사회적 파장이 큰 위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전속고발권 행사와 보완장치인 의무고발요

청권 행사에 객관적인 기준과 역할 조정 필요

- (TO-BE) 중소벤처기업부 등의 의무고발요청제와 조화로운 운용 추진

### 3.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 활성화

- (AS-IS) 현행 분쟁조정제도가 개선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신속한 피해구제가 미흡하다는 지적
- (TO-BE) 공정거래 분쟁조정 통합법 제정 등 효율성, 전문성, 신속성 제고 방안 추진

### 4. 중소기업 기술탈취 예방 및 피해구제를 위한 공정거래시스템 구축

- (AS-IS) 중소기업은 기술탈취를 사전에 방지하거나 적절한 구제를 받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
- (TO-BE) 사전 예방 수단, 엄정한 법 집행 체계, 기술 탈취 구제 수단의 효율적 운영방안 추진

### 5. 디지털 플랫폼 경제의 불공정 행위 규제 및 소비자 권익 보호 강화

- (AS-IS) 플랫폼 경제의 특성과 시장상황 등에 대한 충분한 연구와 논의 없이 기존산업과 유사한 형태의 규제를 단순 신설 또는 연장하는 접근을 취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부처 간 관할권 다툼과 같은 불필요한 논쟁 발생
- (TO-BE) 플랫폼 분야 특유의 역동성 및 혁신이 저해되지 않도록 자율 규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최소 규제

### 6. 납품단가 제도 개선으로 제값 받는 환경 조성

- (AS-IS) 최근 원자재 가격 인상이 지속되어, 원재료를 가공하여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의 영업이익 감소 등 경영난 가중 및 비용 상승시에도 납품 중소기업에 부담이 전가될 우려로 납품대금조정협의제 실효성 제고 등 대책 필요

- (TO-BE) 원자재 가격추이, 하도급 거래관계 및 계약실태 자료 수집, 계약기간 중 원자재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오를 경우 의무적으로 납품대금조정협의회에 응하도록 관련 제도 개선 및 납품단가에 원자재 가격변화를 자동 반영하는 납품단가연동제 도입 검토

### 3

## 향후 전망(또는 대응 방향)

### 1. '기업경제 관련 법령상 특수관계인 제도의 합리적 개선' 관련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동일인은 동일인 관련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임원 현황 및 재무상황 등을 직접 파악해 공정위에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자료를 제대로 내지 않으면 동일인 관련자가 아니라 동일인이 지정 자료 누락과 관련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하지만 혈족 6촌은 사촌 형제의 손자로 현대사회에서는 생사 확인조차 어려울 정도로 먼 친척인 만큼 동일인 관련자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성이 있으며, 공약에 따라 대기업 총수(동일인)의 친인척인 '동일인 관련자' 범위가 합리적으로 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그 범위가 4촌 이내의 혈족, 인척은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정도로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최대한 현대사회의 가족형태의 변화에 따라 합리적으로 조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고, 이 부분은 대통령령으로 위임되어 있어 조정 논의가 된다면 신속하게 구체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2. '엄정하고 객관적인 전속고발권 행사' 관련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법 등에 대해 공정위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 기소가 가능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공정위가 고발에 소극적이라는 문제 때문에 전속고발권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새정부는 공약에 따라 전속고발권 폐지보다는 엄정하고 객관적인 전속고발권 행사를 강조하면서 보완장치인 의무고발요청제와의 조화로운 운용이 예상됩니다. 즉 현행대로 전속고발권은 유지하되 공정위의 중립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조치를 추가하고 검찰과 협력 체제를 강화하는 방향을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가 공정위가 처분한 사건을 의무고발하도록 하는 요청을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어 중복수사와 이중처벌 등 기업에 대한 부담이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해서는 의무고발요청 기준 등 객관적이고 공정한 체계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 3.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 활성화' 관련

새정부는 공약에 따라 사업자간 자율적인 분쟁조정 등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를 활성화하여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체적 분쟁해결제도는 법률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시정조치나 과징금, 고발 등 부담을 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므로 기업들은 사전적인 법위반 예방 노력과 함께 실제 분쟁 발생시 각종 분쟁조정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공정거래법 이외에 흔히 갑을(甲乙) 관계를 다루는 하도급법, 대규모유통업법, 가맹사업법, 대리점법에서도 동의의결제가 본격 시행될 예정이므로, 이러한 제도를 잘 이해하고 적절히 활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 4. '중소기업 기술탈취 예방 및 피해구제를 위한 공정거래시스템 구축' 관련

갑을(甲乙) 관계에 있는 대기업이 중소기업 기술을 유용하는 행위를 강력하게 처벌하고, 예방시스템까지도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기존 공정위의 기술유용감시팀의 확대가 예상되고, 대규모의 직권조사 등 공정위의 법 집행 기조도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더욱이 이미 중소기업기술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 하도급법, 상생협력법 등에서 기술탈취 규제를 겹겹이 하고 있어서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위의 중복 조사와 중복처벌도 우려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철저한 사전 컴플라이언스 등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 5. '디지털 플랫폼 경제의 불공정 행위 규제 및 소비자 권익 보호 강화' 관련

현재 계류 중인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이 원점에서 재검토되거나 규제 대상 등에 대한 일부 수정이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즉,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의 규제 대상은 중개수익 1천억 원 이상 또는 중개거래 금액 1조 원 이상으로 정리된 상황인데 최소 규제 원칙에 맞게 이 기준이 더 상향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근거가 담긴 법안을 추진한다는 것 자체가 자율 규제 방침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점에서 법안이 원점에서 재검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 6. '납품단가 제도 개선으로 제값 받는 환경 조성' 관련

납품단가연동제는 2008년을 시작으로 선거철마다 등장했으나 시장원리 훼손, 중소기업 혁신의지 약화 등 단점이 커 아직 실현한 정부는 없으나, 새정부는 납품대금조정협의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제도개선 뒤에도 문제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납품단가 연동제의 과감한 도입을 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다만 원청업체가 비용 절감을 위해 국내 중소기업과 거래를 끊고 해외 업체와 손잡을 수 있다는 것과 하청업체의 원가 절감 유도도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이 납품단가 연동제의 부작용으로 꼽히면서 최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원자재 가격변동을 하청업체의 납품단가에 자동 반영하는 ‘납품단가 연동제’는 도입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중소기업중앙회나 중소기업협동조합이 하청업체를 대신해 원청업체와의 납품단가 협상을 대행하는 제도를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현재 납품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원자재 가격이 10% 이상 상승할 때만 협상 대행을 허용하는 ‘10%룰’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참고로 현행 하도급법, 상생협력법에서는 공급원가 변동시에 수급사업자, 수탁기업이 납품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새정부는 공약에 따라 이러한 납품대금 조정신청에 반드시 응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결국 중소기업들의 민원제거나 공정위 신고 등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특히 공정위가 운영 중인 ‘납품단가조정 신고센터’를 활용), 이에 따라 기업들은 거래대금 결정 및 조정 등에 있어서 더욱 신중하고 공정하게 결정함으로써 법 집행당국의 강화될 모니터링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 ▣ 담당변호사



변호사 서혜숙

☎ 02-3479-2395

✉ hyesook.seo@barunlaw.com



변호사 백광현

☎ 02-3479-2497

✉ kwanghyun.back@barunlaw.com